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국무조정실 일몰규제심사 결과('19.7.26)를 반영하여 세무사 실무교육을 정한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기획재정부령 제 호

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20조(규제의 재검토) 기획재정</u> <u>부장관은 세무사의 실무교육을</u> <u>정한 제12조에 대하여 2014년 1</u> <u>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</u> <u>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</u> <u>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</u> <u>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</u> <u>야 한다.</u>	<u><삭 제></u>